

4.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

건설교통부공고 제1998-276호 1998. 7. 4

주요 골자

- 가. 자전거 전용도로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함(제11조의2)
- 나. 주차장중 노상주차장은 종전에는 도시계획 결정의 절차를 거쳐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였으나,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므로 이에 맞추어 노상주차장을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함(제17조).
- 다. 종전에는 자연녹지 지역에는 시외버스터미널을 설치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자연녹지 지역 안의 도시철도차량기지에 한하여 시외버스터미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철도와 시외버스의 연계수송체계를 구축하여 여객의 편의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함(제20조제1항 라목).
- 라. 종전에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을 일반주거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반주거지역에는 그 시설이 들어갈 수 없게 함으로써 주거환경의 쾌적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제42조의 3제2호).
- 마. 종전에는 유원지 안에 카지노업소를 설치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유원지 안에 관광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카지노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48조제1항제4호 마목).
- 바. 시장의 종류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 물류센타를 포함하고, 유통업무설비에 유통단지 개발 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를 포함하여 농수산물 물류센타 및 유통단지가 원활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함.(제55조, 제56조)

제7호·제8호 및 제58조).

사. 종전에는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운동장에 한하여 관광사업시설 등의 수익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경기장으로 지정된 운동장에 대하여도 수익시설의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월드컵 축구대회 경기장의 설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제81조제2항).

아. 종전에는 인구밀집 지역 등에 문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제한을 없애므로써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문화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함(제91조의3).

개 정 이 유

최근에 도시환경 및 경제여건이 변화되어 도시 안에서의 토지 이용행위가 증대함에 따라 자전거 전용도로의 설치기준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시외버스정류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하고 농수산물 물류센타를 시장 및 유통업무설비에 새로이 포함시키는 등 도시계획시설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02년 월드컵축구경기장에 대하여도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기장이 원활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다만, 보행자전용도로의 폭은 1.5미터 이

상으로 하고, 자전거 전용도로의 폭은 1.1미터(길이가 100미터 미만인 터널 및 교량의 경우에는 0.9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중 “자전거 전용차선”을 각각 “자전거 전용차로를”로 하고, 동조 제2항제2호중 “차선”을 “차로”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2(자전거 전용도로의 설치기준)
자전거 전용도로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주차장) 이 규칙에서 “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19조제1항중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중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가 자동차운수사업법의”를 “여객자동차터미널 :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로, “자동차정류장을 말한다.”를 “자동차정류장”으로 하고, 동항 제2호중 “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노선화물자

동차 운송사업·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자동차정류장을 말한다.”를 “자동차정류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호중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터미널”로 하고, 동호 라목 본문중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터미널”로 하며, 동목 단서중 “전세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정류장”을 “시외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정류장(도시철도 차량기지 안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과 전세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정류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제42조의3제2호중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제4호 마목중 “위락시설(카지노업소를 제외한다)”을 “위락시설”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유원지중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는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광진흥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55조제1항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

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및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공판장과”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 물류센터와”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시장으로서, 도매센터 및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시장으로서 도매센터·농수산물 도매시장 및 농수산물 물류센터”로 한다.

제56조제7호 단서중 “농수산물공판장”을 “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 물류센터”로 하고, 동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시장의 규모에 과하여는 유통산업 발전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유통업무설비) 이 규칙에서 “유통업무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2. 다음 각목의 시설중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다목 내지 마목의 시설중 2이상의 시설이 동일하거나 인접한 장소에 함께 설치되어 상호 그 효용을 다하는 시설
 -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3호의 규

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 동법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도매센터 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 물류센터

- 나.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또는 철도화물역
- 다. 창고·야적장 또는 저장소(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저장시설을 제외한다)
- 라. 화물적하시설 또는 화물적치용건조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 마. 여객자동차운송사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창고업 또는 도매업에 제공되는 사무소 또는 점포

제6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유통업무설비중 제5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6종목 이상의 국제 규격의 경기시설을 갖춘 경기장이 있는 운동장으로서 주위에 사적과 휴식공간이 있어 휴식·교양 및 관

람에 이용할 수 있는 운동장 또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경기장으로 지정된 운동장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과학·문화·교양시설
2. 관광사업시설·유스호스텔(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경기장으로 지정된 운동장의 경우에는 판매시설 및 위락시설에 한하며, 유스호스텔을 제외한다)
3. 기타 운동장의 관리에 필요한 수익을 위한 수익시설

제84조중 “교육법 제81조”를 “초·중등고등학교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제86조중 “교육법·유아교육 진흥법”을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 진흥법”으로 한다.

제91조의2 본문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91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조의3(문화시설에 대한 결정기준) 문화시설은 이용자의 접근이 쉽고 주거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는 곳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116조의 제목“(도살장)”을“(도축장)”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도살장”을 “도축장”으로, “축산물 위생처리법 제2조제6호”를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117조의 제목·본문 및 동조 제2호중 “도살장”을 각각 “도축장”으로 하고, 동조 제3호중 “도살장 규모”를 “도축장 규모”로 한다.

제118조의 제목중 “도살장”을 “도축장”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도살장”을 “도축장”으로, “축산물위생처리법”을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한다.

제126조제3호중 “소각·재생처리시설”을 “소각시설 및 멸균·분쇄시설”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것은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것으로 본다.

주택회보